

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1995.	6.	12.	조례	제1372호
개정	1995.	12.	28.	조례	제1406호
전면개정	1996.	7.	18.	조례	제1496호
개정	1997.	1.	1.	조례	제1533호
개정	1998.	3.	6.	조례	제1570호
개정	1998.	9.	15.	조례	제1583호
개정	1999.	9.	8.	조례	제1654호
개정	2001.	7.	24.	조례	제1742호
개정	2003.	1.	10.	조례	제1805호
개정	2003.	6.	10.	조례	제1819호
전면개정	2004.	1.	8.	조례	제1854호
일부개정	2005.	5.	10.	조례	제1929호
일부개정	2006.	2.	24.	조례	제1988호
일부개정	2007.	9.	20.	조례	제2060호
일부개정	2009.	8.	3.	조례	제2202호
일부개정	2010.	1.	8.	조례	제2240호
일부개정	2010.	12.	31.	조례	제2297호
전부개정	2012.	10.	12.	조례	제2421호
일부개정	2013.	9.	30.	조례	제2498호
일부개정	2014.	4.	30.	조례	제2539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4.	11.	14.	조례	제2574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4.	11.	14.	조례	제2579호
일부개정	2016.	1.	6.	조례	제2700호
일부개정	2017.	3.	6.	조례	제2802호(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	5.	18.	조례	제2819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	1.	5.	조례	제2918호
일부개정	2019.	5.	10.	조례	제3074호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45호(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53호
일부개정	2020.	4.	1.	조례	제3191호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3469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3.	5.	22.	조례	제3502호(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4.	9.	27.	조례	제3672호
일부개정	2025.	7.	15.	조례	제3784호
전부개정	2025.	10.	13.	조례	제3802호(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센터 등”이란 안양시장이 설치한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을 말한다.
2. “사용료 및 수강료”란 평생학습센터 등의 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자가 납부

하는 사용료 및 교육 수강생이 납부하는 수강료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 등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교육 및 감사위촉) ① 시장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위한 기능, 취미, 교양교육 등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임기 및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강사 해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이용자 범위) 평생학습센터 등의 이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센터: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과 관내 직장인을 우선하고 추가 모집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까지 포함
2. 노인복지회관: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

제7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2. 단체행동을 선동한 사람
3. 음주를 하였거나 소란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행사·회의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평생학습센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이·미용료, 식대 등을 포함한다) 및 수강료는 별표 2에 따라 사전에 부과·징수한다.

제9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시설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평생학습센터 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강당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나. 시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위탁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노인복지회관(강당 제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제10조(수강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결혼이민자

6.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7.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모 등 부양자

제11조(변상)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생학습센터 등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25. 10. 13. 조례 제380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을
“「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제3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비 고
1	만안평생학습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9 (안양동)	평생학습센터
2	동안평생학습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3 (비산동)	
3	만안노인복지회관	경기도 안양시 냉천로153번길 15 (안양동)	노인복지회관
4	동안노인복지회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1 (비산동)	

[별표 2]

□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제8조제2항 관련)

1. 평생학습센터

구 분	기 준	사용료	수강료	비 고
기술교육 취미교육	과목당 1주 수강시간 · 4시간 미만 · 4시간이상~6시간 미만 · 6시간 이상	-	월 15,000원 월 20,000원 월 25,000원	
강 당 소 강 당 다목적실	1회 / 2시간 (기준시간)	< 기본시설 > -평 일 50,000원 -토요일·공휴일 60,000원 < 부대시설 > -냉난방비 20,000원	-	○ 기준시간 초과사용 시 사용료 가산 - 기본시설 : 초과 1시간당 25,000원 가산 * 토요일·공휴일은 30,000원 가산 - 부대시설 : 초과 1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 가산 ○ 부가가치세 별도
전 시 실	1회 / 1일	20,000원	-	○ 부가가치세 별도
식 당	1회 / 2시간	20,000원	-	○ 기준초과 사용 시 초과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징수 ○ 부가가치세 별도

2. 노인복지회관

구 분	기 준	사용료	수강료	비 고
이·미용료	커트 퍼머	2,000원 5,000원	-	
경로식당 (중식비)	1식	2,000원	-	
목 욕 탕	1회	1,000원	-	
강 당	1회/2시간	20,000원	-	○ 기준시간 초과사용 시 초과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징수 ○ 부가가치세 별도
취미교육	1명/1개월	-	무료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